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인근 휴양림과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 변경, 산불예방 기간동안 행위 금지조항 추가,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안 제6조)
-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법 명칭변경 및 위약금배상처리 기준변경
(안 제7조, 안 제8조, 별표2, 별표3 신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산불예방 기간동안 취사행위 금지조항 추가(안 제11조)
-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증가
(안 제4조, 별표1)
-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증가
(안 제6조, 별표1)
-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대상 증가
(안 제7조 제8조, 별표1)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숲속의 집 및 오토캠프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으로 한다. 후면에 단서 “(신분증 및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제시자에 한하며, 성수기(7~8월)동안은 예외로 한다.)” 를 신설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10. 휴양림내의 동식물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1.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자
12. 숲속의 집 사용자 : 1동당 차량 2대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불예방기간(11월~이듬해 5월까지)에 야외에서 하는 취사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유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생략) ② 숲속의 집 및 오토캠프장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u>〈단서신설〉</u>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 (신분증 및 각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제시자에 한하며, 성수기 (7~8월)동안은 예외로 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2조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 받는 자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10. 휴양림내의 동식물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1.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자 12. 숲속의 집 사용자 : 1동당 차량 2대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관련법령 개정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4. <삭 제>	제7조(위약금 처리) ① -----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1호)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 --.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4. <삭 제>	제8조(배상처리) ①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제한) (생략) 1.~6.(생략) <신 설>	제11조(행위제한) (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산불예방기간(11월~이듬해 5월까지) 야외에서 하는 취사행위	산불예방기간 동안 취사행위 금지 조항 추가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주차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승용, 승합, 화물	1대/1회	2,000	
승합(25인승이상), 화물(2톤이상)	1대/1회	4,000	

□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야 영 장	1동/1일	3,000	
야 영 데 크	1동/1일	6,000	
오 토 캠 프 장	1개소/1일	7,000	주차료 면제

□ 숲속의 집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수 기	비 고
숲속의집	26.44㎡(황토)	1동/1일	70,000	49,000	주차료 면제
	39.66㎡(황토)	1동/1일	90,000	63,000	
	46.27㎡(황토)	1동/1일	110,000	77,000	
	19㎡(황토)	1동/1일	50,000	35,000	
	27㎡(황토)	1동/1일	70,000	50,000	
※ 비수기(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30% 할인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표 2】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구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이용자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계 약해제	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소비자가 사용당 일 사용예정 시간까 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성수기 : 7~8월 매주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소비자가 사용당 일 사용예정 시간까 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3】

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 기준

구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계 약해제	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충요금의 10%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충요금의 30%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충요금의 50%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충요금의 100%배상	※성수기 : 7~8월 매주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충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충요금의 20% 배상	

관 련 법 령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생략)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09.1.16.개정]
[별표Ⅱ] 18. 숙박업(1개 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숙박업	1) 성수기의 경우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 비수기의 경우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배상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2.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

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별표 3] 입장료가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제10조의3제1항 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전쟁기념관 4. 국공립 수목원 5. 국공립 휴양림 6. 국공립 박물관 7. 국공립 공원 8. 국공립 미술관 9. 국공립 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	---

◎ 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 교육위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교육위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타시도 참고자료

전국 공립자연휴양림 사용료 비교표

도	시·군	휴양림명	산막 (숲속의집) 사용료			비 고
			8평형 이하	9-13평형	14평형 이상	
대구	대구	비슬산	60,000	70,000	140,000	
경북	안동	계명산	40,000~65,000	75,000~90,000	125,000~200,000	
	경주	토함산	70,000	85,000	140,000~250,000	
	청송	청송	60,000	80,000	100,000	
	의성	금봉	60,000	80,000	130,000	
	군위	군위장곡	-	60,000	80,000	비수기 일반30%, 학생/군위주민50%감면
	상주	성주봉	70,000	90,000	150,000	
	문경	불정	50,000	70,000~100,000	150,000~200,000	
	울진	구수곡	50,000	80,000	100,000	
	칠곡	송정	-	70,000	85,000	비수기 일반40%, 칠곡주민30%감면
	영주	옥녀봉	45,000	65,000	100,000	
강원	홍천	가리산	60,000	80,000	120,000	
	춘천	집다리골	50,000~70,000	90,000	130,000	
	원주	치악산	40,000~80,000	100,000	150,000	비수기 50%감면
경기	남양주	축령산	50,000	60,000~80,000	100,000	
충북	제천	박달재	30,000~50,000	80,000	200,000(44평)	
	단양	소선암	50,000~70,000	80,000	150,000	단양주민 50%감면, 비수기30%감면
	영동	민주지산	45,000~65,000	75,000~90,000	105,000~200,000	
	청원	옥화	30,000~37,000	60,000~65,000	90,000~165,000	
	충주	봉황	50,000	-	120,000~160,000	
	충주	계명산	50,000	80,000	100,000~200,000	
	옥천	장용산	-	60,000	80,000~300,000	
	공주	금강	-	56,000	78,000~110,000	
충남	청양	칠갑산	-	40,000~50,000	70,000~100,000	비수기 30% 감면
	아산	영인산	50,000	65,000~75,000	95,000~150,000	
	금산	남이	60,000	110,000	170,000	
	보령	성주산	50,000	70,000	100,000	
	홍성	용봉산	50,000	70,000	150,000	동절기 주말 및 평일 30% 감면
	부여	만수산	50,000	70,000	90,000~180,000	
	거제	거제	50,000	-	100,000	
경남	합천	오도산	50,000	60,000	70,000~120,000	
	함양	용추	30,000~40,000	50,000	-	동절기 30%감면
	거창	금원산	30,000~50,000	50,000~80,000	100,000	
	장수	와룡,방화동	25,000	45,000~70,000	150,000	비수기 30%감면
전북	임실	세심	20,000~40,000	50,000	-	
	완주	대아, 고산	40,000	60,000	80,000~120,000	
		비수기	30,000	50,000	70,000~100,000	
전남	고흥	팔영산	30,000~50,000	70,000	10,000~120,000	
	화순	백아산,한천	40,000	60,000	70,000	비수기 30%감면
	보성	제암산	30,000~50,000	80,000	-	
	해남	가학산	50,000	60,000	-	
	광양	백운산	30,000	40,000~50,000	70,000~100,000	

※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시 설 명	인 실(m ²)	이 용 요 금(원)		비 고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	
숲속의집 / 산림문화휴양관	3인실(13m ² 이하)	21,000	39,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3~4인실(16m ² ~20m ²)	30,000	50,000	
	4인실(23m ² ~26m ²)	32,000	55,000	
	5~6인실(29m ² ~35m ²)	40,000	70,000	
	6~8인실(39m ² ~46m ²)	50,000	85,000	
	8~9인실(49m ² ~56m ²)	60,000	98,000	
	10~11인실(59m ² ~66m ²)	70,000	110,000	
	12인실(70m ² 이상)	90,000	150,000	

※ 경상북도내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현황

자 치 단 체 명	감 면 현 황							비고
	국 가 유공자	독 립 유공자	참 전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환 자	장애인	투 표 참여자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조례	○	○	○	○	×	○	○	'09.7.28. 조례개정
경주시 자연휴양림 조례	○	○	○	○	×	○	○	'09.07.02 조례개정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	×	×	×	○	×	50% 감면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	×	×	×	×	○	×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조례	○	×	×	×	×	○	×	
칠곡 송정자연휴양림 조례	○	×	×	×	×	○	×	